

예 산 총 칙

2017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780,111,853	23,403,356
일반회계		488,127,532	14,643,826
특별회계		291,984,321	8,759,530
	기타특별회계	291,984,321	8,759,530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986,785	29,604
	주차장특별회계	349,391	10,482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2,697,575	80,927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216,128,641	6,483,859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1,290,423	38,713
	치수사업특별회계	451,761	13,553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718,201	21,546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69,361,544	2,080,846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4,338,546천원으로 한다.
일반회계 재해 재난목적예비비는 5,500,000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0,8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경비,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간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등은 상호 이용할 수 있다.